한우산업지원법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46

발의연월일: 2024. 7. 29.

발 의 자:송옥주·윤준병·민병덕

임미애 · 임호선 · 한정애

위성곤 • 이병진 • 권칠승

서삼석 • 박해철 • 전종덕

박 정ㆍ이기헌ㆍ이워택

이수진 • 이해민 의원

(1791)

제안이유

한우산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, 호주,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,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.

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,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,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.

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 및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, 한우의 수급 조절, 도축·출하장려금 지원,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

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,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 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다.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등의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(안 제9조).
- 라.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,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(안제10조).
- 마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중장기 한우수급 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 하도록 하며,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 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(안 제11조).

- 바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.
- 사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 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.
- 아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및 토종유전자원 보호를 위하여 한우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 록 함(안 제15조).
- 자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·기술·재무·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축·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도록 함(안 제17조).
- 차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,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 양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(안 제20조).
- 카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,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(안 제23조).

한우산업지원법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,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한우"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 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소로, 한우 어미소 에서 태어난 소를 말한다.
 - 2. "한우농가"란 규모에 상관없이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.
 - 3. "한우산업"이란 한우의 생산·사육·가공·포장·보관·수송·유통·판매·수출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소득을 증대

하며 한우를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 진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토종자원적 가치와 인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교육·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한우산업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한우산업의 육성

- 제5조(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 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
 - 2. 한우산업의 국내외 여건,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
 - 3. 한우의 유전자 보호를 위한 개량・증식 및 보존・육성에 관한 사

항

- 4. 한우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및 수급조절 방안
- 5. 한우 가격안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
- 6. 「축산법」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한우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추진에 관한 사항
- 7. 한우의 자급률 확보에 관한 사항
- 8. 한우 유통 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
- 9.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
- 10. 한우산업 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
- 11.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한우산업 분야 재생에너지 확대방안
- 12. 그 밖에 한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 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 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알리고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-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

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관 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⑦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한우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할 수 있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, 범위와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연구·개발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효율적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·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여야 하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육성과 한우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1. 한우의 품종육성 및 종모우 증식기술의 고도화
- 2. 한우의 사양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
- 3. 한우의 사육 등 관련 기술의 실용화
- 4.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
- 5. 그 밖에 한우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8조(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한우의 생산·사육·유통·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실 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수 있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 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한우산업발전협의회) ①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

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 협의회(이하 "협의회"이라 한다)를 둔다.

- 1.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
- 2.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
- 3.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
- 4. 자원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
- 5. 한우의 유통 및 수출지원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1.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워
- 2. 전국한우협회를 대표하는 사람
- 3. 한우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
- 4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
- 5. 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원
- 6.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- ③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수급조절협의회, 한우수출지원협의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)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1.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
 - 2.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
 - 3. 저메탄 및 저단백사료 등 사용에 따른 지원
 - 4. 한우의 부산물 활용 및 이용촉진을 위한 지원
 - 5. 그 밖에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장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

- 제11조(한우의 수급조절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(이하 "한우수급정책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 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필요한 관리사업을 추진하되, 한우의 예상 수급, 예상 생산량, 예상 경영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수급정책 수립시 한우 사육규모별 환경·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12조(도축·출하장려금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 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 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경영비용 부담 완화) 국가는 한우농가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사료 및 사료 구매자금 지원 등 생산비 감축을 위한 대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14조(경영개선자금 지원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또는 축산물 가격의 급락,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(이하 "경영개선자금"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(이하 "경영개선계획"이라 한다)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한우농가의 소재지 및 사육두수
 - 2. 한우의 사육 방법

- 3. 경영개선의 기본계획 및 개요
- 4. 경영개선계획의 시행 시기 및 기간
- 5. 그 밖에 경영개선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 부렁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를 결정·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경영개선계획의 제출, 타당성 검토, 통보의 절차·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한우의 자급률 확보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, 토종유 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한우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.
- 제16조(교육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.
 - 1.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저탄소 사양에 대한 교육
 - 2. 한우의 부가가치 향상에 대한 교육
 - 3. 한우의 효과적인 유통방법에 대한 교육
 - 4.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

- 단체를 한우농가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한 우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또 는 포상을 할 수 있다.
- 제17조(소규모 한우농가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(거주, 생계, 한우산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하여 경영·기술·재무·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해 도축·출하장려 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제18조(부산물의 활용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·가공· 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(이 하 "한우의 부산물"이라 한다)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·개발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 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부산물을 식용으로 공급하는 자에 게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부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과 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.
- 제19조(소비촉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급식의 확대, 시장개척 및 홍보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1. 군 급식 및 학교급식의 한우소비 목표량 설정 및 공개
 - 2. 그 밖의 소비증진을 위한 공공급식 추진
- 제20조(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 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- 1.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
 - 2. 한우 산지 처리의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
 - 3.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
 - 4.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
- 제21조(도축·가공시설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·가공시설의 구축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도축장 간의 물류기능 통합과 수도 권 판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산물종합물류센터의 설치 및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거점도축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판로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.

- 제22조(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의 한우유 통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야 한다.
- 제23조(수출기반조성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1. 해외개척,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
 - 2. 수출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·훈련
 - 3. 수출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
 - 4. 한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
 - 5. 그 밖에 수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제4장 보칙

- 제24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25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2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

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